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82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김도읍・박상웅・윤한홍

구자근 • 박충권 • 김민전

김소희 · 김성원 · 권영진

김장겸 · 정점식 · 인요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기관이 보증하여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었으나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인의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하도급계약을 할 때"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u>하도급계약을 할</u>	②하도급계약을 체결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	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u> 경할 때</u>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